

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
제10조(지도감독) ①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년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의한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.

제11조(손해배상) 보육시설을 수탁운영 관리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장비와 비품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

제12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관계 법령 및 양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 9 】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제출년월일 : 1994. 5. 26.

제 출 자 : 양 주 군 수

제안이유

- '80년부터 공공요금의 억제방침 및 '93년도 요금동결로 인하여 상수도요금 수준이 원가에도 크게 미달하여 상수도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
- '94년부터 '97년까지 년차적으로 상수도요금을 현실화 하여 재정수지의 향상을

도모하고

- 수도물 과소비억제 및 수질 오염방지와 좋은 식단체의 확대보급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모범 음식점에 대하여 수도요금 30%를 감면하고
- 한번 사용한 수도물을 처리 재이용하는 중수도 보급확대를 위하여 중수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장래 물부족 대비하고
- 현행의 양주군급수조례중 전후 조문이 상이한 내용을 개정하여 상수도 급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양주군수도급수조례 제26조(요금)의 규정에 의한 별표 제2호의 요율을 평균 6.9% 인상 조정하여 “별지 1”과 같이 개정
- 양주군수도급수조례 제29조제2항의 가정용 2종을 가정용으로 개정
- 양주군수도급수조례 제37조(요금등의 감면) 규정중
 - (1)군수가 지정하는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30%를 감면
 - (2)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시설 기준에 적합한 중수도 시설을 설치한자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
- 양주군수도급수조례 제40조의 (징수처분) 을 (정수처분) 으로 개정
- 양주군수도급수조례 제42조(과태료)의 규정에 의한 별표제5의 기준중 5항 내지 9항을 삽입 “별지 2”와 같이 개정

양주군조례 제 호

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(요금) (별표2) 업종별 요금표를 (별지 1)과 같이한다.

제29조(사용수량의 인정) 제2항중 “가정용2종”을 “가정용”으로 한다.

제37조(요금등의 감면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7조(요금등의 감면)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- 1. 군수가 지정하는 모범음식점 : 수도요금의 100분의 30
- 2.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시설 기준에 적합한 중수도를 설치한 자
- 3.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

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군수가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.

제40조중 “(징수처분)”을 “(정수처분)”으로 한다.

제42조(과태료) (별표 5)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을 (별지 2)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4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1)

업 종 별 요 율 표

(단위 : 원, 톤)

업 종 별	기 본 요 금		초 과 요 금		비 고
	사 용 량	요 금	사 용 량	요 금	

가 정 용	10 이하	1,200	11 - 30 31 - 50 51 이상	180 200 240	
영 업 1 종	20 이하	4,300	21 - 50 51 - 100 101 - 300 301 이상	230 270 300 350	
영 업 2 종	30 이하	7,000	31 - 50 50 - 100 101 이상	360 480 580	
육 탕 1 종	200 이하	41,000	201 - 300 301 - 500 501 이상	400 480 640	
전용공업용	계약량 톤당	210	-		
공 공 용	30 이하	5,500	31 이상	270	

(별지 2)

과 태 료 및 행 정 처 분 기 준

위 반 내 용	과 태 료		행 정 처 분
	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분담금 의 징수를 면한자	공공시설물을 부정 사용한 자	
1. 급수도용	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, 가정용은 2배	50,000원	.부정급수장치 철거
2. 승인을 받지 아니 한 급수공사	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, 가정용은 2배	50,000원	.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

위 반 내 용	과 태 료		행 정 처 분
3. 계량기 작용 방해 훼손, 무단철거 및 망실	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, 가정용은 2배	20,000원 단, 가정용은 10,000원	. 계량기수리 및 구입 설치명령장치 철거 .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 할때까지 정수처분
4. 계량기 매물 공작 물 설치 및 봉인 파손		10,000원 단, 가정용은 5,000원	. 원상회복 명령 단, 봉 인 파손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. . 명령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
5. 허가를 받지 아니 한 특수 가입시설		20,000원	. 철거 또는 허가절차 이행명령 . 명령불이행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
6. 사설소화전의 무 단사용 또는 봉인 파손		10,000원 단, 가정용은 5,000원	. 과태료를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
7. 정수처분중인 급 수전의 무단개전		10,000원 단, 가정용은 5,000원	. 종전 처분에 따른 의무 이행 및 과태료 납부 의무를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
8. 제19조 규정에 의한 급수판매금 지 위반		10,000원 단, 가정용은 5,000원	. 과태료 납부기간내 납 부하지 아니할시는 이 행할때까지 정수처분
9. 업 종 위 반			. 업종위반일로부터 가산 하여 차액 추징 . 업종 직권변경 . 추징금을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을시는 이 행할때까지 정수처분

신 .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	안
<p>제29조(사용수량의 인정) ① (생략) 1. ~ 3. (생략) ②1주택(단독주택, 공동주택의 분양단위)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2종 요금을 적용하고 단일 주계량기로 공동 주택의 급수를 계량하고 요금을 부과할 경우 총 사용량을 입주가구수로 나누어 수도요금을 계산 미 입주 주택(호)에 대하여는 기본요금을 면제한다.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에 한한다.</p>	<p>제29조(사용수량의 인정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 ----- 가정용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	<p>제37조(요금등의 감면) <u>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37조(요금등의 감면)①<u>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u> 1. <u>군수가 지정하는 모범음식점:수도요금의 100분의 30</u> 2. <u>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시설 기준에 적합한 중수도를 설치한 자</u> 3. <u>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</u> ②<u>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군수가 감면 대상임을 알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40조(징수처분)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.</p>	<p>제40조(징수처분) ----- ----- -----</p>

신 . 구조문 대비표

업종별	현행		개정		인상율 (%)	비고
	사용량	요금	사용량	요금		
가정용	10 이하	1,200	10 이하	1,200	0	
	11 - 30	180	11 - 30	180		
	31 - 50	200	31 - 50	200		
	51 이상	240	51 이상	240		
영업 1 종	20 이하	4,000	20 이하	4,300	7.5	
	21 - 50	220	21 - 50	230	4.5	
	51 - 100	260	51 - 100	270	3.8	
	101 - 300	290	101 - 300	300	3.4	
	301 이상	340	301 이상	350	2.9	
영업 2 종	30 이하	5,800	30 이하	7,000	20.7	
	31 - 50	300	31 - 50	360	20.0	
	51 - 100	400	51 - 100	480	20.0	
	101 이상	480	101 이상	580	20.8	
육탕 1 종	200 이하	36,000	200 이하	41,000	13.8	
	201 - 300	360	201 - 300	400	11.1	
	301 - 500	430	301 - 500	480	11.6	
	501 이상	570	501 이상	640	12.3	
전용공업용	계약량 톤당	210	계약량 톤당	210	0	
공공용	30 이하	4,200	30 이하	5,500	31.0	
	31 이상	200	31 이상	270	35.0	